

K리그 안전 가이드 라인

[Safety and Security Guideline]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 목 차 -

I. 일반 사항

- 제1조. 목 적
- 제2조. 방 향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의 무
- 제5조. K리그 안전 원칙
- 제6조. 안전 가이드라인의 전제

II. 시 설

- 제7조. 경계시설 안전운영 및 동선
- 제8조. 관람석
- 제9조. 안전시설
- 제10조. 편의시설(물)

III. 인력, 운영

- 제11조. 안전업체 및 안전요원
- 제12조. 안전요원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
- 제13조. 보안검색 및 금지행위
- 제14조. 출입도구
- 제15조. 장내아나운서(석) 및 중계석

IV. 의료, 위생

- 제16조. 의료
- 제17조. 위생

V. 비상계획

- 제18조. 비상계획

VI. 별첨

- 1) 임시관람석 가이드라인

K리그 안전 가이드 라인 [Safety and Security Guideline]

1. 일반 사항

제1조 목적

K리그 안전 가이드 라인(이하, 안전 가이드라인)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관람객, 선수, 심판, 미디어 및 관계자**(이하, 안전대상) 안전관리 대상시간(이하, 안전시간)동안 안전관리 대상영역(이하, 안전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최선의 안전환경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안전시간 및 안전영역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사고의 예방활동, 현장 안전활동, 비상 시 대처활동을 통해서 K-리그의 쾌적한 안전환경 구현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K리그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한다.

제2조 방 향

안전 가이드 라인은 국제 축구연맹 안전 규정에 부합하고 K리그 환경을 토대로 연구하고 특히, AFC 클럽 라이선싱 ‘안전’, ‘의료’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근거로 마련되었다.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은 안전규정의 해석, 안전 업무의 한계,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행정적 한계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은 연맹이 주최하는 **공식 대회**에 적용된다.

② 시간적, 공간적 한계

- 1)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은 안전시간 동안 안전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 2) 안전시간 및 안전영역의 규정은 안전업체 선정 주체가 상호 서면 계약한 계약서 상에 지정한 안전시간과 안전영역에 해당하며 다음 내용을 필히 포함한다.

구 분	내 용
안전시간	개문 60분전 ~ 경기종료 후 안전대상의 안전영역 내에서의 완전한 해산 시점
안전영역	경기장 출입구를 기점으로한 경기장 시설을 포함한 내/외부 영역, 선수, 심판, 미디어, VIP최단 진입동선, 진입로 및 주차장, 원정 응원단의 접근로 및 최근접 주차장, 주관객 동선, 매표소 및 외부 공식 상업 시설

제4조 의무

- ① 연맹은 FIFA, AFC, KFA에서 제시하는 안전규정을 토대로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구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 가이드 라인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FIFA, AFC, KFA로부터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규정 및 연맹의 필요에 의한 수정·보완 시 구단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 ② 각 구단은 제공된 안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안전 가이드 라인 외 연맹이 요구하는 합리적 요청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K리그 안전 원칙

- ①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은 스포츠 정신과 그 가치의 연속성을 존중한다.
- ②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은 정치·종교·인종차별 및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주의·주장 등 순수 경기 외적인 행위 및 표현물을 일체 불허한다.
- ③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은 안전대상등 타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순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단체의 행위 및 물적 요소를 배제한다.
- ④ 본 안전 가이드 라인은 안전대상간 열린 소통을 지향한다.

제6조 안전 가이드 라인의 전제

① 승인

- 1) 연맹 주최의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홈 구단 및 경기장은 FIFA의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기장은 국내법을 충족하는 시설 안전 기준과 K리그 경기장 시설규정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 2) 홈 구단 및 경기장은 홈 구단을 통해 시즌 전 개최 경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 경기장 소유 또는 시설관계기관과 체결한 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서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현행법상 안전, 보안 규정의 관한 준수 서류 및 시설 안전 확인서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경기장 일반 시설 현황
 - 경기장 특정시설 현황(축구 경기 개최를 위한 시설)
 - 예) 섹터 구분 시설, 락커룸, 해자, 선수·심판 보호시설, 등
 - 홈경기 안전 계획서 (**클럽 라이선싱 기준A, 대피 계획*)
 - 출입통제 계획, 동선계획, 핵심구역 내 안전활동 내역, 출입도구 계획, 시간 계획, 조직도 (정부 안전기관, 의료기관 및 시설 관계자 포함), 통신망, 안전요원 인력현황, 안전·보조요원 및 주요업무 인력 배치도, 물자·장비·장구 계획, 주차 계획, 비상계획, 등은 반드시 포함한다.

② 점검

홈 구단이 지정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즌 전(기타 경기장의 경우 30일 전) 까지 연맹에 승인과 관련한 점검을 요청하여 실사를 받아야 하며,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 개최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연맹은 서면보고 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구단의 연고 지역 내 타 경기장을 선정하여 연맹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경기장 단독사용

- 1) 홈 구단은 안전시간 동안 안전영역 전부에 대해서 단독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홈 구단은 비상시를 제외한 안전시간 동안 안전영역 내의 출입구의 개폐 권리를 유일하고 단독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 3) 기존시설 및 입주업체, 혹은 홈 구단의 사정으로 인해 단독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대상의 동선 분리 계획을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안전영역을 일부 조정하여 이를 홈경기 안전 계획서상에 표기 후 연맹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단, 핵심구역과 일반관람석의 단독사용은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

- 4) 핵심구역은 경기 개최 시 안전밀도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 요소이며 핵심구역 내 배치인력은 필히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핵심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핵심구역
ZONE 1	그라운드
ZONE 2	선수, 심판 구역 (선수·심판 대기실, 도핑실, 경기운영본부, 의료실, 선수·심판 동선)
ZONE 3	미디어 구역 (미디어 동선, 기자석, 기자실, 기자 회견장, 공동 취재구역, TV 구역, 중계 방송석, 장내 아나운서석, 사진 촬영 구역)
ZONE 4	VIP 구역 (VIP 좌석, VIP 동선, 리셉션 장소)
ZONE 5	원정 응원단석 (전용 관람석, 이격 시 이격 공간, 원정 응원단을 위한 편의시설 및 동선)

④ 동선분리

안전대상간 동선 분리는 현장 안전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동선 분리는 시설, 장비, 안전요원을 통한 안전밀도를 조절함으로써 핵심구역 내 참여자간 간섭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며 시간대별, 영역별 안전대상 고유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⑤ 소통

- 1) 홈 구단, 안전업체, 정부 안전기관, 의료기관 및 시설관리 주체, 홈 및 원정 응원단, 공식상업권 자간의 소통과 지원체계는 안전을 유지하고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홈 구단 및 안전업체는 타 관계 단체 및 실무자와의 연락체계와 현장 통신,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에는 소통에 따른 결과물(홈경기 안전계획서)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2) 또한, 홈경기 관리 책임자는 홈경기 당일 투입 인원과 시설, 도구의 배치 현황을 작성하여 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근무 위치
 - 근무자의 신분(소속) 및 인원 수 (안전요원 및 보조요원)
 - 근무자의 역할
 - 근무자간 비상연락 체계
 - 협조기관 (정부 안전기관, 의료기관, 시설관리단체) 담당 및 연락처
 - 시설, 도구 사용장소 및 사용목적

⑥ 책임자 선정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1) 홈 구단은 홈경기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두를 충족하는 안전책임자를 고용 또는 임명해야 한다.
 - 경비업법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안전요원 또는 경비지도사이어야 하며, 홈 구단과 서면 계약한 안전업체 소속인 자로 선정해야 한다.
 - 안전업체는 경비업법상 해당분야(시설경비, 신분보호) 허가를 취득하고 계약 당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II. 시설

제7조 경계시설 안전운영 및 동선

① 접근 동선

- 1) 안전대상의 동선은 안전영역 접근 초기부터 누구나 식별 가능한 충분한 안내 표지판을 제공받아야 하며, 우천 시 및 동절기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2) 출입구 영역 및 안전대상의 접근 동선은 일몰 전후를 기점으로 안내표지판 및 출입도구의 식별, 보행시 안전사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 3) 노약자 및 장애자의 전용 편의 동선을 준비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문제로 전용 동선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의 안내요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업시설

- 1) 매표소, 상업 전시공간(CD ZONE), 공식 판매점 등의 위치는 관람객의 편의상 주관객 동선 및

홈 구단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안전대상의 대기 동선 및 출입에 간섭을 야기시키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없다.

- 2) 공식 상업 권자 외 불법 상행위 시설(노점상, 홍보시설) 및 행위자(이동 상행위, 압표상 등)는 안전시간 내 안전영역에서 절대 설치, 판매, 위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현장 안전 활동 시 지속적인 관리와 배제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항 발생 시를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주차시설

- 1) 주차시설은 선수·심판 주차구역, VIP 주차구역, 미디어 주차구역, 비상차량 주차구역, 단체 원정 응원단 주차구역, 관계자 주차구역 그리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선수·심판 비상 차량을 위한 주차구역은 항상 차량 통행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2) 단체 원정 응원단의 주차구역은 가급적 전용 출입구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응원단의 규모 및 기존시설의 한계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동동선 간 가급적 홈구단의 안전요원의 지원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 3) 선수·심판을 위한 주차 공간은 이동동선과 더불어 타 안전대상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되고 분리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특히 일반 관람객으로 부터는 기존 시설, 장비, 혹은 안전요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야만 한다.

④ 경계 시설

- 1) 출입구의 환경은 밝고 쾌적해야 하며 좌석구역, 출입구역, 타 출입구 및 타구역 안내 등의 표지판이 식별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 유지되어야 한다.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2) 출입구는 입·퇴장 시 보행에 간섭을 야기시키는 시설물의 설치 및 단락, 파손, 돌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대기열 로 부터 출입구까지는 항상 안정된 질서유지가 가능하도록 안전요원과 장비를 운영하여 질서유지 선을 구성하도록 한다.
- 3) 현장운영 출입구는 안전대상의 안전과 혼잡예방 그리고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해당 출입구로부터 최소 15M 이상의 간섭 받지 않는 대기동선을 확보해야 하며, 이 공간 내에는 기존 경기장 설계상의 이유와, 수·검표,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 외 그 어떠한 설치물로도 안전대상의 신속하고 안전한 입·퇴장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4) 수·검표 및 보안검색을 위한 임시 설치물 등은 비상시와 퇴장 시 언제라도 제거할 수 있게 안전요원에 의해 관리 되어져야 한다.
- 5) 출입구 및 내·외곽 경계 구조물 근처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차량 외 어떠한 차량도 주차할 수 없다.
- 6) 출입구 및 경기장 내·외곽을 구분 짓는 경계 구조물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로 최소 2.5M 이상 이어야 하고 월담, 침입, 극도의 압력으로 인한 붕괴, 해체로부터 안전한 불연 소재의 고정 설치물이어야 한다.
- 7) 출입구는 경우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출입구 일지라도 안전요원에 의해 관리 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관리란, 비상시 및 입·퇴장 시 언제라도 출입구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개·폐시 원활한 작동 상태를 유지한 형태로 안전요원의 관리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8) 모든 출입구는 장내에서 장외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안전시간 내 현장 운영 출입구는 안전시간 동안 개방된 상태로 안전요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9) 원정 응원단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출입구를 제공 받아야 한다.
- 10) 관람석은 가급적 동,서,남,북의 네 구역으로 나뉘는게 바람직하나 경기장 여건 상 어려운 경우 원정 서포터즈석, VIP석, 미디어 시설(장내 아나운서석 포함)의 경우 타 안전 대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경계시설 및 안전요원을 제공해야 한다.
- 11) 관람석과 그라운드 사이의 경계시설은 비인가자의 그라운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관람석은 그라운드로부터 최소 2.2M의 높이(펜스 높이 포함)에 위치 해야한다.
- 12) 비인가자의 그라운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그라운드와 관람석 간에는 해자(MOAT) 혹은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펜스는 경기 관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해자 및 펜스등 차단시설 설치가 경기장 여건상 어려운 경우 그라운드 및 관람석 최 하단에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근무자세로 다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인가자의 그라운드 진입에 대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좌석 착석 시 까지 관람객에게 심리적 장애물(예-위험색상 도색, 안내표지, 이동 동선 상 사전고지 등)로 간섭을 주어야만 한다.

⑤ 직문

- 1) 외부에서(혹은 내부) 직접 핵심지역(그라운드)으로 진입 가능한 직문은 위해 기도자로부터 가장 용이한 접근 경로이므로 안전요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 2) 직문이 외부와 직접 한 개의 경계시설로 이루어져 있다면 반드시 내·외부 한 곳의 여유 공간에 임시 설치물을 통해서 접근자에게 간섭을 주어야만 한다.
- 3) 직문은 항상 개방된 상태로 안전요원에 의해 관리 되어져야 하며 비상차량의 통행과 비상구로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계 및 이벤트 목적을 위한 차량의 주차 행위와 간섭을 야기시키는 기기의 설치는 금하도록 한다.

제8조 관람석

① 일반관람석

- 1) 경기장에는 수용 가능한 모든 관람객이 착석하여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람석은 좌석 구분이 가능한 독립된 개인 좌석이어야 하며 화재나 파손 그리고 신체 일부의 끼임 현상으로부터 안전한 불연 소재의 재질로 등받이가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단, 등받이가 없더라도 개인 좌석이 구분될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관람석은 주최자의 시행 기준 또는 홈 구단의 티켓 운영 방침에 따라 목적인 구역과 좌석으로 나뉠 수 있어야 한다. **(*클럽 라이선싱 기준A)**

② 원정석

- 1) 홈 구단은 원정 응원단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 2) 원정석의 위치는 홈팀 응원석과 대치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요원의 분리, 관리 및 경계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홈 구단은 원정 응원단을 위한 독립적인 편의시설(매점, 화장실 등)을 마련해야 한다.
- 3) 원정석 구역 내 홈 관람객의 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원정석의 직상층(원정석이 하층으로 제한된 경우)의 안전요원을 통한 안전밀도 강화가 필요하며 동일 구역 내 착석이 필요한 경우 위해물질 투척과 충돌에 대비해 원정 응원단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0M의 물리적 이격과 함께 경계선 설치 및 안전요원의 집중배치로 안전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석 (*클럽 라이선싱 기준C)

장애인석은 장애인과 동반자를 위해 전체 관람석 대비 최소 0.5% 이상의 전용좌석을 구비해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동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특정목적의 관람석

- 1) 특정 목적 좌석이란, 미디어를 위한 그라운드 사진기자석, 취재 기자석, 중계방송석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석, 경기감독관석, VIP석을 의미한다.
- 2) 특정 목적 좌석은 해당 좌석 착석 인가자의 목적 활동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계 시설로 분리되어 지고 안전요원에 의해 관리 되어져야만 한다.
특정 목적 좌석으로의 비인가자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 되어야 하며 특히 장내방송 및 중계 방송석의 안전 유지는 비상시 대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⑤ 임시관람석

임시 관람석의 사용은 사용 전 반드시 연맹의 승인 및 허가를 거쳐야 하며, 승인 및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임시 관람석은 사용할 수 없다. (별첨1 참조)

제9조 안전시설

① 비상구 및 대피로

- 1) 관객을 위한 비상구 및 대피로 그리고 그라운드에서의 비상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 2) 비상구와 대피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방성과 관리성이다. 이에 따라 비상구는 항상 개방된 상태(잠금장치 해제)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안전요원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며 비상구와 대피로의 방향과 위치는 암전인 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비상시 비상구 및 대피로 개척과 안내는 비상계획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4) 비상시 안전대상의 안전과 탈출을 위한 그라운드 진입은 가능하다.

② 조명

- 1) 조명시설은 순수 경기 목적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이다. 또한 환경을 통한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절대적 기여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 2) 안전관리 시간동안 주관객 동선, 출입구, 지하 주차장 및 접근동선 비상구등 대피로, 경계시설, 관람석 등 안전과 범위에 취약한 지역은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 운영 되어야 한다.
- 3) 홈 구단의 이벤트를 위한 암전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객석등과 비상구 및 대피로의 조명은 전원을 차단 할 수 없다.
- 4) 정전 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구 및 대피로 그리고 순수경기를 위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되는 비상 전력 운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주 공급 전원의 중단시 대체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 및 통제실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1) 경기장은 CCTV를 통해 경기장 전 영역 혹은 핵심구역을 관찰할 수 있고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 직·간접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위 시설은 비인가자의 출입 제한과 보안을 위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2) CCTV는 최소한 핵심구역의 관찰이 가능해야 하며 저장 장치는 지자체가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되 최소 3일간의 기록을 저장,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3) 해당 시설에는 안전시간 동안 비상시 및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비 담당자가 상주 하여야만 한다.

④ 안전상황 통제실

- 1) 홈 구단과 서면 계약한 안전업체 및 경찰·소방 등 지원 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 안전상황 통제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 2) 안전상황 통제실은 가급적 경기장 관람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 3) 또한 핵심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방송시설 및 관제, 통제실과 최근접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음으로 인한 통신의 제약이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⑤ 방송시설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1) 방송시설은 비상시 안전대상에게 비상시 계획에 의거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이다.
- 2) 방송시설은 가능하다면 경기장 전체, 내·외부, 특정 구역으로 나누어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 3) 방송시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자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는 필히 안전시간 내 비상시 매뉴얼을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⑥ 화재 안전시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에 의거 소방, 피

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 설치,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⑦ 선수·심판실 및 보호시설

- 1) 입, 퇴장 시 선수, 심판을 보호하기 위한 고정 또는 이동식 안전터널 설치를 권장한다. 이는 위해물질의 투척 및 기타 위해로부터 안전한 덮개가 설치된 형태의 시설을 의미한다.
- 2) 안전터널은 경기 중 관람객의 관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3) 선수, 심판의 좌석은 위해 물질 투척으로부터 최소한 보호 될 수 있는 재질로 물리적 위해 가능 거리가 가까운 방향으로 안전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또한 경기 중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재질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4) 선수, 심판실의 안전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핵심구역이다.
안전시간 동안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잠금 및 해제가 가능한 장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은 도난 및 위해 가능성에 대비해 의도하지 않은 그 어떤 인적요소로부터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5) 우천 시 및 결빙 시, 혹은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임시시설 및 설치물

- 1) 임시시설 및 설치물은 홈 구단의 목적을 위한 마케팅 및 중계시설을 의미한다.
- 2) A형 또는 L형 광고판의 경우 비상시 퇴로를 가로 막지 말아야 하며 바람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더불어 K리그 시설규정을 준수한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관람객의 관람 여건을 훼손하여 설치 할 수 없다.
- 3) 특수효과 사용 및 관람석 및 대피로 내에 임시 설치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사전 사용계획에 따른 연맹으로부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폭약의 경우 별도로 관할 안전기관의 허가 절차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행 업체로부터 안전유지를 위한 관리 인력을 제공받아야 한다.
- 5) 관람석 및 대피로에는 중계방송을 위한 임시 설치물 및 중계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으며 홈 구단이 지정한 중계카메라 위치일 경우 티켓 판매 시 충분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⑨ 낙뢰 보호장치 (**클럽 라이선싱 기준A*)

낙뢰로부터 경기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지붕 (**클럽 라이선싱 기준B*)

전체 좌석수의 최소 1/10 이상은 지붕이 있는 좌석으로 갖추는 것을 권고한다.

제10조 편의시설(물)

① 매점

- 1) 매점은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점의 판매 목적을 위한 간이 설치

물 등은 관람객 이동 동선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2) 경기장 영역에서 홈 구단 또는 시설 관리 주체로부터 승인된 공식 상업권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향후 관리를 위해 가급적 승인 주체는 홈 구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K리그는 알코올의 섭취를 궁극적으로 지양한다. 홈 구단에 의해 알코올의 판매를 허용한다면 홈 구단이 지정한 공식 판매업자에 의해 장내에서의 판매만 가능하다.
- 4) 매점의 판매 가능 품목은 홈 구단의 마케팅 전개에 따른 허용 품목으로 한정 지을 수 있으며 금지하는 용기 및 형태로는 판매할 수 없다.
- 5) 매점 내에서의 화기를 사용한 직접 조리와 관람객 스스로의 직접 조리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판매 품목 상 화기의 사용이 불가피 하다면 매점 주체의 관리하에 매점 판매원의 조리 만이 가능하며, 화기 사용 시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만 한다.
- 6) 매점은 홈 구단과 협의하여 공식 판매업자가 판매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K리그에서 제한하는 판매허용 품목과 형태를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 캔 형태의 주류 및 음료는 종이컵, 비닐팩 등의 용기에 판매자가 직접 담아 판매
 - 유리재질의 음료 및 품목의 직접 판매금지
 - 600ml를 초과하는 PET 품목은 직접 판매 불가능
 - 얼린 생수 및 음료의 판매 금지
 - 식품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금지
 -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판매 금지
(호각, 막대풍선, 비 허가 품목의 간이 폭죽 등 반입 금지 물품)
 - 주최자, 홈 구단에서 허가 되지 않은 품목의 판매 금지
- 7) 홈 구단은 공식 상업권자로 하여금 상기 명시된 판매 품목 및 형태의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시정토록 해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홍보물 (*클럽 라이선싱 기준B)

- 1) 안내표지판은 경기장의 기본정보, 주최자 및 홈 구단의 정보를 안전대상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2)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은 안전영역 및 필요하다면 안전영역 외 구역에 시설주체 그리고 지자체 협조와 허가를 통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3) 안내표지판은 시인성, 식별성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되 전체영역에서 세부영역까지 단계적, 순차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4) 안내표지판은 국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래픽이나 문자로 표기 되어야하며 강풍이나 노후로 인한 안전위해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 5) 안전영역 외 홈 구단의 대형 홍보물 혹은 정보전달을 위한 물적요소를 설치할 경우 파손이나 기후적 요소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예) 에드빌론 설치 시 강풍으로 인한 고정체의 신체위험
- 6) 홈 구단은 경기 시 여러 가지 전달도구를 통해 안전대상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필히 사전고지할 의무가 있다.

7) 안전구역 내 안전요원 및 보조요원은 홈 구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정보 및 당일 정보를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③ 안내소

- 1) 홈 구단 및 경기장은 안전영역 내 경기장을 찾는 사람을 위해 안내소를 적절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안내소에서는 홈 구단 및 경기장의 기본정보를 포함해 당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관람객 서비스에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 경기장 안내, 날씨정보, 행사정보, 다음경기일정 등

④ 미아(심신허약자)보호소

- 1) 경기 시 의료사고와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안전 영역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2) 미아(심신허약자)보호소는 주관객 동선과 주관객 출입구에 인접한 대다수의 안전대상이 찾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미아(심신허약자)보호의 발생형태는 크게 2가지로 일반적인 보호자와의 격리상태와 의료(심신피로 및 병적징후)문제를 포함한 혼재 격리상태로 나뉠 수 있다.
- 4) 상기와 같은 원인으로 문제 발생 시 형태에 따라 비상시 매뉴얼에 의거하여 보고체계 이행과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⑤ 물품보관소(보관함)

- 1) 물품보관소(보관함)은 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개인소지품의 자발적 보관을 위해 안전영역 내 필요한 곳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물품 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위해기도자의 의도에 최소한의 간섭을 주기 위해 통행이 빈번하고 CCTV가 설치된 경기장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3) 물품보관함의 설치에 관람객 보관물품의 반환 시 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보안검색과 결부된 사생활 보호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Ⅲ. 인력, 운영

제11조 안전업체 및 안전요원

① 자격요건

- 1) 안전업체란, 현행법상(경비업법)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업자로 홈경기 안전에 필요한 허가 종목(시설경비, 신변보호)을 취득하고 홈 구단과의 계약시점에 해당 감독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을 받지 아니한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 2) 안전요원이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신임교육을 이수한 법적 연령에 도달한 경비원을

의미한다.

② 고용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1) 홈 구단은 대회 시 경기장에 안전대상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안전요원을 고용·배치 하여야 한다.
- 2) 안전업체와의 서면 계약 시 반드시 직무의 범위, 안전요원의 규모, 안전요원 시간계획, 안전시간, 안전영역, 안전대상, 안전요원의 권리와 의무, 물자·장비 및 장구 목록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안전업체와의 직무의 범위 설정 시 홈 구단은 안전업무 외 다른 지원업무의 요청을 가급적 사양한다.
- 4) 안전업체는 홈 구단으로부터 안전업무 권한을 인계받을 수 있다.
- 5) 홈 구단은 안전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전업체 혹은 자체적으로 보조요원을 고용·배치할 수 있다. 보조요원은 안전 및 기타 업무의 지원자 역할을 하며 운영, 진행, 자원봉사 요원을 통칭하여 보조요원이라 칭한다.
단, 현장에서 보조요원의 안전지원 업무는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없으며 안전 요원의 관리 및 지휘아래 진행될 수 있다.

③ 안전업체 의무

- 1) 안전업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지도사의 선임
 - 계약 당사자간 명기된 안전요원 규모에 따른 안전요원의 배치 및 폐지 신고 의무(매 경기시)
 - 계약서에 명기된 현장 안전 활동의 진행
 - 계약 당사자 간 협의된 현장 안전책임자 선정
 - 적법한 안전요원을 고용한 현장 안전활동의 직접 관리와 지휘
 - 현행법이 보장한 안전요원의 근로 환경 준수
 - 계약기간 중 관할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도급자에게 서면 통보할 의무
 - 대책회의 참석
 - 안전요원의 현장교육
 - 보안유지
 - 하도급 권리의 양도 불가 의무
 - 현장안전 활동중 안전요원의 태업 및 파업 불가에 대한 관리 책임

④ 안전요원의 의무

- 1) 안전시간 동안 안전요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업무범위, 업무내용을 교육 받고 숙지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
 - 지휘 체계상 합리적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

- 혼잡방지, 질서유지 및 주요시설의 시설경비
- 선수, 심판, VIP의 신분보호
- 사전 안전 점검 수행
- 유일하게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출입구의 열쇠확보와 운영
- 안전상황실 운영
- 출입구, 비상구, 대피로 유지 관리
- 범법자의 신고
- 출입 통제 업무 수행(비인가 차량 및 물적, 인적 요소의 입장 거부 등 배제 활동)
- 비인가자의 상시 배제 활동
- 연맹 또는 홈 구단의 합리적 지시사항 이행
- 금지 행위자의 입장거부 및 배제 활동
- 비상시 계획의 이행
- 보안 검색 활동(반입 금지물의 배제 활동)
- 안전시간 내 해당 업무 구역에서의 이탈 금지(비상시 제외)
- 업무 특성상 현장 안전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태업 및 파업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
- 보안유지

⑤ 안전업체, 안전요원의 권리

안전업체 및 안전요원은 현행법이 허용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도급자 및 관계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현행법이 보장한 근로 환경과 대기공간(교육장소)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요원의 복장

- 1) 안전요원의 조직체계를 현장안전 책임자, 구역 책임자, 일반 안전요원, 보조요원으로 나눈다면, 홈 구단 및 관객으로부터 식별을 용이케 하기 위해 각각 다른 색상의 동일한 복장(자켓 혹은 조끼)을 착용한다.
- 2) 복장은 식별이 용이한 “안전”과 유사한 문구가 표기된 반사 재질의 판별력이 뛰어난 색상의 의류를 권장한다.

⑦ 현장 안전조직

- 1) 현장 안전 활동에서 안전조직의 적절한 구성은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킨다.
- 2) 조직 구성상 필요요소는 유·무선 통신망 구성, 지휘체계 및 일반 보고체계, 안전상황실 운영, 비상시 보고체계,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등이다.

제12조 안전요원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

① 배치·규모

- 1) 홈 구단은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비용절감과 안전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2) 핵심구역 내 특히 ZONE1, ZONE2 안전요원은 경력자로 배치한다.
- 3) 직문의 중첩 안전유지를 위해 PHOTO LINE 및 그라운드 근무자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다.
- 4) 안전요원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이 핵심구역의 선정과 시간대별 취약지점의 선정이므로 인력 운영 시 재배치의 유용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어야 한다.
- 5) 일반적으로 경비·경호 목적물의 집중단계는 운영구역→경계구역→경비구역→경비강화구역→안전 확보구역 순이므로 이를 적극 고려하여 배치효율을 높여야 한다.
- 6) 최소 안전요원의 규모는 핵심지역의 필수소요 인력을 제외하고 관람객 10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투입할 것을 권장한다.

② 통신

- 1) 현장 안전활동에서 통신은 상시 개방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훈련된 통신음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어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안전요원 외 안전대상이 긴급상황을 청취한 후 발생 할 수 있는 동요를 막기 위함이다.
- 2) 통신체계는 홈 구단 안전요원 전체에게 신속하고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핵심구역과 중요지점의 근무자에게는 반드시 그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3) 무선통신의 기기적 결함 및 유효 통신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져야 한다.
예) 중계기 설치, 우천 시 대비, 혼선대책, 대통령행사 및 군사작전 시 전파통제 등

③ 근무요령

- 1) 안전요원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인가된 자에게는 홈 구단의 서비스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행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안전요원은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유지를 해야 할 대상과 구역을 등지고 위해 요소의 접근기도를 차단하도록 한다.
(단, 해당구역 책임자는 중첩의 기능과 함께 전체를 관찰하여야 한다.)
- 3) 출입구에서의 근무자 위치는 출입구와 면한 외부가 바람직하다.
- 4) 혼잡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의 근무자는 장내아나운서와 별개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확성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5) 그라운드와 관람석의 경계시설 근무자 그리고 그라운드 근무자는 상시 상호협업체계를 훈련하여야 한다.
- 6) 안전요원은 근무 시 적절한 장비나 물자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제13조 보안검색 및 금지행위

① 일반원칙

- 1) 보안검색은 안전영역에서 인간의 정상적인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고 해당 대회의 안전을 저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인적·물적요소의 접근방지 및 확인을 통한 배제 활동이다.

- 2) 보안검색은 강제적이지 않다. 또한 검색을 허락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검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 할 수 있다.

(단, 개문 전 비인가자의 장내 입장 시는 보안 검색과 관계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3) 보안검색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적·물적요소에 빠짐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 4) 홈 구단은 보안검색의 미 실시로 인한 사고에 책임이 있다.

② 보안검색의 기술적 이해

- 1) 위해요소는 물리보안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물리적 척도가 존재한다. (단, 테러에 준하는 정보 보안(사이버테러), 전자공격 등 위해에 대해서는 제외) 즉, 각 홈구장 여건상 위해요소의 접근 및 위해 기도의 용이성, 방어체계의 물리적 환경이 각각 다르다. 그렇다면 위해 기도자가 투척을 통한 위해 기도 시 종합경기장과 전용구장의 위해 성공 가능성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각 구단 환경에 맞게 보안검색 기준을 수립하되 위해 가능성이 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시간대별 취약지점 안전밀도 강화, 검색 강화, 안전요원 규모 증가 등등)
 - 해자(MOAT) 혹은 그라운드와의 적절한 경계 시설이 없는 경우
 - 시간대별 취약지점
 - 고위험 경기
 - 선수·심판의 승·하차 지점의 안전확보가 용이치 않을 경우
 - 물리적 위해 가능 거리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관람석인 경우
 - VIP 및 선수·심판 좌석의 보호시설이 미흡한 경우의 직상층 및 주변

③ 현장 보안검색활동의 이해

- 1) 인적요소의 보안검색활동은 비인가자의 색출 및 배제, 금지행위자의 입장거부 및 배제, 소지 물품 및 신체에 대한 직접검색이 있다.
- 2) 물적요소의 보안검색활동은 직접위해 물적요소, 위해성 물적요소, 경기외적 물적요소, 경기방해 물적요소 배제 활동으로 유관 및 기기검색을 사용해 검측한다.
- 3) 보안 검색 활동 중 직접검색인 경우 피검색자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 실시 하도록 하며 소지 물품 검색 시 피검색자가 직접 소지품을 개방하도록 권유한다.
- 4) 보안 검색을 실시할 경우 피검색자에게 안내표지판 및 구두를 통한 보안검색의 기준과 근거를 게시하고 안내해야만 한다.
- 5) 보안 검색 시 검색탁자를 설치하고 반입금지물품의 폐기함, 보관시설, 물품보관증을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 6) 홈 구단은 보안 검색의 목적, 반입금지물품, 금지행위에 따른 제반사항을 피검색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④ 반입금지물

- 1) 반입금지물은 안전영역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순수 경기의 정상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물적요소를 의미한다.
- 2) 반입금지물은 다음과 같다.
 - 정치·종교·인종차별·허가받지 않은 선전물 등 개인이나 단체의 경기 외적인 주의·주장 및 이익을 위한 표현물
 - 연맹 또는 상대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 상업적,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전자기기
 - 무기류, 화기류, 화약류, 인화성 물질
 - 마약류, 생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 일체의 알코올류(공식판매업자가 장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
 - 유리병, 캔류, **600ml 초과 PET병**
(단, 연맹 및 구단이 인정하는 개인음료 보관 용기는 반입 허용)
 - 정상적인 경기관람에 방해를 주는 물품(대형풍선 등)
 - 파편이 생기거나 매우 단단한 물질
 - 애완동물
 - 원활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물품
 -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맹과 구단이 정한 물품

⑤ 금지행위

안전영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 기도자는 사안에 따라 ①경고 ②입장거부 ③배제 (퇴장) ④접근금지 ⑤현장보존 후 경찰인계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홈 구단은 해당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	조 치
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	경고 → 입장거부
반입금지물품의 장내 소지자	경고 → 배제(퇴장)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관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입장거부
타인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경고 → 배제(퇴장)
상습적인 금지행위 기도자로 연맹 혹은 구단이 정한 자	접근금지
정치·종교·인종차별 등 개인이나 단체의 주의·주장 행위	입장거부 → 배제(퇴장)
개인·단체 이익을 위한 상업적 행위 및 상대(팀)를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 행위자	경고 → 입장거부 → 배제(퇴장)
출입도구 미 소지자	입장거부 → 배제(퇴장)
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경고 → 입장거부 → 퇴장
범죄행위 기도자,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으로 의심되는자	현장보존·신고 후 경찰인계
그라운드 난입 및 경기진행에 지나친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행위	배제(퇴장) → 경찰인계

제14조 출입도구

① 출입도구의 이해

- 1) 출입도구란 경기관람과 업무를 위하여 안전시간동안 안전영역내로 접근하는 사람이 소지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최 측이 승인하여 제작된 실질적인 결과물이다.
- 2) 출입도구의 종류 및 기본 디자인은 시즌 전 연맹이 제공하며 홈 구단은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 3) 출입도구는 원칙적으로 홈 구단이 제작·관리의 의무를 지니며 위·변조의 가능성에 대비해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티켓을 제외한 출입도구의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4) 경기장을 방문하는 안전대상은 예외 없이 출입도구를 소지하여야 하며 연맹이 승인하지 않은 그 어떠한 출입도구도 홈 구단은 사용할 수 없다.
- 5) 출입도구 사용자를 위해 홈 구단은 출입도구의 소지자에게 출입도구의 출입가능지역과 한계 등 사용방법을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6) 출입도구는 반드시 1인 1개(매) 소지가 원칙이며 구단이 정한 티켓과 관련한 무료입장 정책에 한하여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다.

② 출입도구의 종류와 기능

- 1) 출입도구는 크게 티켓, AD카드, 조끼, 보조비표(차량비표 포함)로 구분한다. 그 세부내용과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한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출입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보조비표는 제외)

구 분	종 류	발급대상자	출입가능구역
티켓	일반권, 할인권 연간회원권 초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단의 티켓판매 정책에 의거 발행 • 경기장 수용내 발행을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해당 관람석
AD카드	연맹 (OFFI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맹 및 구단소속직원 및 그에 준하는자 • 경기감독관 및 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무공간
	P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기자 • 사진기자 및 ENG취재 기자는 조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석 • 공동취재구역 • 기자회견장 • 미디어 동선
	ST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업자 • EVENT 대행사 • 안전요원 • 시설관계자 • 안전구역 내 입점업체 (제한필요) • 그외 업무를 위해 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무공간
	SPONSOR PART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후원사 • 공식 상업권자 • 참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람석 • 해당 업무공간
	V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맹 또는 구단 초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람석 • 해당 업무공간
	TV(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방송사 • 경기시작 -90분이후 중 계팀은 조끼 착용(그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무공간
조끼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위치 근무 중계팀 (그라운드 및 중계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중계위치 업무공간 • 미디어동선 및 대기공간
	PHO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라운드 사진기자석 • 기자실 • 미디어동선 • 기자회견장 • 공동취재구역
	E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G 취재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라운드 사진기자석 • ENG취재석 • 미디어동선 • 기자회견장 • 공동취재구역 • 기자실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것조 및 의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시간내 그라운드내 업무공간 • 대기공간
	기수단·볼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단·볼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시간내 그라운드내 업무공간 • 대기공간 • 관람석

구 분	종 류	발급대상자	출입가능구역
보조비표	팔찌, 스티커 (일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GUEST • 에스코트 및 보호자 • 경기전·중·후 그라운드 이벤트 출연자 • 기타 그라운드 일일업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시간내 그라운드 업무공간 • 대기공간 • 관람석
	일일출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취재기자 • 기타 업무상 필요한 비정규 출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무공간 • 일반관람석 제외
	차량출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경기일 • 해당 주차장 접근허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출입도구와 같이 사용

③ 출입도구 사용상의 권고

- 1) 티켓을 제외한 출입도구 사용자의 출입구는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출입구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각 출입도구에는 필요한 정보 및 고지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출입도구의 한계로 인해 기입하지 못할 경우 출입도구 소지자에게 유의사항 및 기능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 장내아나운서(석) 및 중계석

① 기능·안전 유지

- 1) 장내아나운서는 경기의 직접운영과 안전대상에게 편의정보 전달을 위해서 존재하나 안전 목적을 위해 추가로 비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장내아나운서의 안전업무 개입여부는 경기감독관 및 주최자, 홈경기 안전책임자와 즉각적인 현장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 2) 중계석 및 중계시설의 안전유지는 궁극적인 프로경기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중요 요소이다. 생중계시 현장 전광판은 중계권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람객에게는 현장 정보전달 및 비상시 장내방송과 더불어 비상구 및 대피로 등의 정보전달 도구로 쓰여진다.
- 3) 장내아나운서(석)와 중계석은 고유 기능상 장내를 조망하기에 효과적인 위치이어야 하며 분리시설 혹은 실내에 위치하여 잠금장치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상황실과도 비상시 즉각 협의가 가능한 통신체계와 위치가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요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4) 장내아나운서의 멘트는 그 어떠한 혼잡의 상황에서도 장내·외를 장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청취 가능한 시설을 경기장은 갖추어야 한다.
- 5) 장내아나운서는 경기 시 필히 요구되며, 비상시 매뉴얼을 통한 교육과 방송 시나리오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비상시 유형에 따른 방송 시나리오는 경기 시 항상 비치·보유하여야 한다.

② 개입상황

- 1) 장내아나운서의 현장개입은 안전영역 내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비상행동요령에 의거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일치된 행위를 유발케 하여야 한다.
- 2) 개입 시 기초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관객의 입·퇴장 및 집결지에서의 혼잡·정체 시
- 계획상 반영된 출입구의 파손 및 수·검표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출입구 변경사항 유발시
- 경기외적인 사유로 인한 집단 행동 시
- 개인 및 단체 혹은 응원단 간에 폭력 및 충돌 시
- 개인 또는 단체의 경계시설 침입 시
- 안전대상이 복합적인 이유로 심각한 범죄에 다수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 의료문제와 혼재된 미아(심신 허약자)의 보호자와 격리상태 시
- 경기지연 및 연기에 따른 결정 시
- 잠재적인 폭발성/가연성 장치의 발견 및 위해기도자의 공격정보 획득 시
- 테러, 정전, 자연재해, 화재, 붕괴, 집단의료사고 등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 시
- 기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위험상황 발생 시

IV. 의료, 위생 (Medical, Hygiene)

제16조 의료

① 응급치료실 (*클럽 라이선싱 기준A)

- 1) 경기 시 의료관련 지원요청 건은 안전영역 내에서 미아발생과 더불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시 현장 초동 대응은 안전대상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2) 홈 구단은 경기 시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안전대상을 위해 구성요소를 구비한 현장 응급치료실을 갖춰야 하며, 안전시간동안 이를 운영해야 한다.
- 3) 관람객을 위한 응급치료실은 일반적으로 선수단의 응급치료실과 대치되는 방향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점이어야 한다. 또한 경기장 좌석구조상 좌석수가 가장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4) 응급치료실은 사용자의 접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5) 홈 구단은 안전시간동안 다음과 같이 응급치료실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급차의 위치로 응급치료실 및 경계시설이 가까운 지점이어야 한다.

구분	구성(구비)요소	비고
장비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제세동기, 응급처치물품 및 약품과 그것의 보관장소·보관함 • 간이침대 및 침구류, 내부조명,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남녀화장실, 식수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용 응급치료용품 별도 추가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 자격 취득자 또는 1급 응급구조사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또는 의료기관(병원)과의 연락체계 구축

② 의료진 대기

홈 구단은 안전대상을 위해 최소 경기시작 90분 전부터 안전 대상의 퇴장 시까지 의료진을 구성하여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의료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최소기준〉

- 현행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 또는 주치의 1명
- 현행법상 간호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1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1명
- 현행법상 인정되는 특수구급차(운전자 포함) 1대 (일반구급차 + 의료장비 추가 허용)

③ 자동제세동기

홈 구단은 홈경기 안전 대상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각 구단은 선수단 훈련, 이동 시 자동제세동기를 의무 휴대해야 한다.

④ 주치의 임명 (*클럽 라이선싱 기준A)

각 구단은 선수단의 의료행위 및 지원, 도핑방지 정책의 책임을 갖는 최소 1명 이상의 주치의 를 임명해야 한다. 의료진은 경기와 훈련 중의 의료지원을 책임진다.

주치의는 현행법상 면허를 취득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⑤ 물리치료사(의무트레이너) 임명 (*클럽 라이선싱 기준A)

각 구단은 경기와 훈련 중 선수단의 의료처치 및 물리치료에 대한 책임을 갖는 최소 1명 이상의 물리치료사를 임명해야 한다. 물리치료사(의무트레이너)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 트레이너(AT)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⑥ 관중상해 보험

홈 구단은 안전대상, 특히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단, 시설의 주체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이 경기 시 안전대상에게 적용 가능한 경우 상기 사항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⑦ 선수단 건강검진 실시 (*클럽 라이선싱 기준A)

각 구단은 구단에 소속(등록)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심혈관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제17조 위생

① 화장실 (*클럽 라이선싱 기준B)

1) 경기장은 충분한 남·녀 화장실을 보유해야 한다. 화장실은 상수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휴지 및 손 건조기를 갖춰야 한다. 또한 화장실은 밝고 쾌적한 상태로 위생적이어야 함과 동

시에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1,000명의 관람객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개의 좌식 남성용변기, 8개의 남성용 소변기, 8개의 좌식 여성용 변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용 화장실 또한 구비 되어야 한다.

② 매점

- 1) 홈 구단은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경기장 내 공식 판매업자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진다.
- 2) 홈 구단은 매점의 청결, 보관상태, 유통기한, 허가품목 외 판매 등 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할 의무가 있다.

③ 흡연실

경기장은 금연구역이다. 단, 홈 구단의 사정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흡연실은 관람석과는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④ 청결유지

- 1) 안전시간동안, 가능하다면 안전영역 전체에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2) 안전대상의 동선에는 불연소재의 가급적 투명한 휴지통을 다수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

V. 기타

제18조 비상계획

① 일반적 이해

- 1) 비상계획의 수립은 물적·인적·지리적·자연적 요소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대비해 예비하고 학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안전작용이다.
- 2) 홈경기 관리 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경기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경기감독관 지시 아래, 안전업체, 정부 안전기관 및 시설관리단체 등과 상호 원활하고 신속한 상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 3) 단, 경기감독관의 판단이 불가능한 사안 또는 현장에서의 선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비상계획에 따른 사고 유형별 전문인력(조직체계 內)의 지휘, 판단 아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후 경기감독관에게 보고한다.

② 비상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홈 구단은 시즌 전 승인을 위해 반드시 안전계획서 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분	유형 및 내용
물적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붕괴·정전·감전 • 통신체계붕괴·중앙통신체계붕괴
인적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선 침범·의료사고·공격적행위·폭력 • 개인·단체의 경기 외적인 주의·주장 행위 • 미아발생·불법행위자의 발견 • 단체간 충돌 • 경기의 직접방해 행위 • 테러 • 테러기도자 정보 및 위험정보 획득 시 • 위험물 취급자 발견시 및 위험 물질로 의심되는 상황 시 • 혼잡 시 또는 혼잡으로 인한 대규모 압사 예측 시 • 선수 간 충돌 및 선수·심판간 충돌
지리적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체 및 마비 • 접근수단 미비
자연적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해일·폭설·폭우(홍수, 범람)·강풍·폭염·한파 • 기타 국가재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획수립 • 유·무선 통신체계 구축 •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현장대응 매뉴얼

③ 단계별 위험경기

연맹은 단계별 예측되는 위험등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각 구단은 이에 해당하는 예측상황 시 연맹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

구 분	상 황	비 고
고위험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위협 • 역사적으로 충돌사례가 빈번한 최고 라이벌 관련 경기 • 재난 지역 내 경기 •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기 • 티켓 발매 시스템의 마비 및 다른 이유로 관람객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는 경기 • 그라운드와 객석, 응원단석의 경계시설이 없으면서 라이벌전인 경기 • 강등 및 순위결정을 위한 중요한 경기 • 만석이 예상되는 경기 • 상대팀과 직전경기에서 집단행동을 야기할 문제가 되었던 경기 • 경기장 시설의 심각한 결함 발생시 • 챔피언 결정전 및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이후경기 • 그외 심각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경기 예측 시 홈 구단 및 안전책임자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 제어하여야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법에 준하는 정부 안전기관의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위험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이 예상되어지는 경기 • 평일이고 경기시간이 퇴근시간과 겹치며 많은 관람객의 집객이 예상되어 일시적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기 • 역사적으로 충돌사례가 있는 라이벌전 • 직전 경기 시 심판판정 등 소규모 불만사례가 있는 경우 • 지정 좌석권 발행 시 중복좌석 발행이 다수 발생할 경우 • 기후적요소로 인해 일반적 재해가 예측되는 경우 • 정치·사회적 이슈 부각으로 경기외적인 단체 행동이 우려되는 경기 • ACL(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 기타 일반경기보다 예측 외 비상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C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밀도 유지
일반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예측 내 비상상황만 우려되는 경기 • 평상시 경기 	

상기내용을 근거로 각 구단은 비상계획 내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첨 1)

임시관람석(이하 가변석)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본 가변석 가이드라인은 가변석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최상의 관람환경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변석의 전제

- ① 가변석은 임시관람석 형태로 법령이 정하는 구조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② 가변석 설치 및 사용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령이 지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 및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연맹의 승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 ③ 가변석은 법령에 의해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인을 통해 설계, 시공, 유지, 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④ 가변석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⑤ 홈경기운영책임자는 기존에 가입된 관중상해보험에 가변석을 이용하는 관중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중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⑥ 가변석의 위치 및 운영으로 양팀 선수단, 심판진, 상업광고물, 미디어(취재,중계,사진), 볼보이, 의료진의 시야(노출), 동선,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⑦ 연맹은 홈 클럽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변석 승인 및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가변석의 승인

- ① 홈 클럽은 가변석 사용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을 사용일 7일 전까지 서면 보고해야 한다. 단, 가변석의 구조와 규모에 따라 연맹이 판단하여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설치운영기간, 규모, 설치장소, 설계도
 - 허가권자의 허가 증명서, 안전 확인서
 - 운영, 안전계획서
 - 연맹이 요구하는 추가서류
- ② 연맹은 상기 제1조, 제2조를 근거로, 클럽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변석 사용을 승인한다.
- ③ 가변석의 점검은 설치 완료된 상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가변석의 재설치, 증축, 개축(전부 또는 일부 철거 후 재 축조)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존치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도 상기 ①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가변석의 설치, 운영

① 가변석의 위치

- 1) 가변석은 터치라인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골라인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2) 그라운드-가변석 사이에 상업광고물(A보드, 롤링보드, LED보드 등)이 설치되는 경우 가변석은 상업광고물을 기준으로 최소 1.5m 이상 이격거리를 뒤야 한다.
- 3) 팀 벤치가 있는 본부석에 가변석을 설치할 경우, 팀 벤치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팀 벤치-가변석 사이에는 경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원정팀 벤치 주변으로는 일반관람객을 위한 가변석 설치는 지양한다.

② 경계시설

- 1) 가변석 경계시설은 통로를 제외하고 사람이 쉽게 통과 할 수 없는 구조로 월담, 침입, 극도의 압력으로 인한 붕괴, 해체로부터 안전한 고정 설치물을 권장한다.
- 2) 가변석 하단(그라운드 방향)에는 비인가자의 그라운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고정된 경계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가변석 하단에 고정된 경계시설이 없는 경우 반드시 이동식 설치물을 설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물리적, 심리적 간섭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설치물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3) 상업광고물은 경계시설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4) 가변석 하단에는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근무자세로 가변석 가로 너비 10m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인가자의 그라운드 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요원은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유지를 해야 할 대상과 구역을 등지고 위해요소의 접근 기도를 차단하도록 한다.
- 5) 가변석의 안전유지를 위해 경계시설 근무자 그리고 그라운드 근무자는 상시 상호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출입구

- 1) 출입구의 환경은 밝고 쾌적해야 하며 좌석구역, 출입구역, 타 출입구 및 타구역 안내 등의 표지판이 식별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 유지되어야 한다.
- 2) 출입구는 입·퇴장 시 보행에 간섭을 야기시키는 시설물의 설치 및 단락, 파손, 돌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대기열로 부터 출입구까지는 항상 안정된 질서유지가 가능하도록 안전요원과 장비를 운영하여 질서유지 선을 구성하도록 한다.
- 3) 가변석 출입구가 가변석 하단(그라운드 방향)에 설치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 상 어려운 경우 충분한 경계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④ 관람석

- 1) 가변석 내 관람석은 좌석 구분이 가능한 고정되고 독립된 개인 좌석이어야 하며, 등받이가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단, 좌석에 등받이가 없거나 또는 좌석이 설치되지 않는 스탠딩석의

경우, 연맹은 가변석의 규모와 높이를 고려하고 상기 제1조, 제2조를 근거로 해당 가변석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 2) 가변석의 특성 상 충돌, 끼임, 낙하, 미끄럼 등을 대비하여 조치해야 한다.
- 3) 홈 클럽은 가변석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입금지물**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 검색의 목적, 반입금지물품, 금지행위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보안검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해야 한다.
- 4) 가변석 내에는 사용자의 유의사항을 전달,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 5) 가변석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화장실, 매점)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변석을 이용하는 홈 클럽은 상기내용과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가변석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